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1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2021. 1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1]

1. 보험종목의 명칭

구 분		보험종목의 명칭
보장형 계약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기간중 50%) (이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이라 한다)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1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
	표준형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1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
적립형 계약(보장형 계약 전환시에만 적용함)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 (단,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에만 적용하며, 이하 '스마트전환형 계약'이라 한다.)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보장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시에만 적용함)		

※ 단, '표준형'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함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구 분	보험기간
보장형 계약	종신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90세, 95세, 100세, 110세 만기

단,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종 중증치매 간병자금 지급사유 해당일까지로 함

나. 보험료 납입기간

(1) 보장형 계약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2) 적립형 계약

: 종신납

(3) 스마트전환형 계약

: 일시납

(4)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 일시납

다. 가입나이

(1) 보장형 계약

- 가입최저나이 : 만 15세
- 가입최고나이 : 성별, 납입기간별로 아래와 같음

구분		최고가입나이
남자	5년납	67세
	7년납	66세
	10년납	64세
	12년납	63세
	15년납	61세
	20년납	58세
여자	5년납	72세
	7년납	71세
	10년납	69세
	12년납	68세
	15년납	67세
	20년납	64세

(2) 적립형 계약 (전환시점의 나이)

피보험자	전환시점의 나이	
	남자	여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만15세 ~ 75세	만15세 ~ 75세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3)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시점의 나이)

피보험자	전환시점의 나이			
	해지환급금 보증		해지환급금 미보증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만 15세~60세	만 15세~64세	만 15세~70세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4)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시점의 나이)

피보험자	전환시점의 나이	
	남자	여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35세~70세	24세~70세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라. 보험료 납입주기

- (1) 보장형 계약 : 월납
- (2) 적립형 계약 : 수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조건부인수를 위한 부가특약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표준하체인수특약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하지 않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매 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3)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배로 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다음에 정한 한도로 한다.

-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100\% \times$ 가입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합계액

다만, 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시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한다. 또한,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한다.

나. 적립형 계약

(1) 기본보험료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3) 보험료 납입한도

(가) 기본보험료

- 최저한도 : 20만원

- 최고한도 : 전환시 보장형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함)의 20%

(나) 추가납입보험료

-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제12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에 따른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 내에서 보험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적립형 계약 전환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적립형 계약 전환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납입 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다) 최저한도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1) 기준보험료 및 기본보험료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전환금액

※ 전환금액: 보장형 계약의 전환시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단, 특약보험료 제외)

(3) 보험료 납입한도

- (가) 이 계약의 기준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준보험료 총액’의 2배로 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다음에 정한 한도로 한다.

- $\text{기준보험료} \times (1 + 10\% \times \text{스마트전환형 전환후 경과년수}) - \text{이미 납입한 기준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다만, 스마트전환형 전환후 경과년수는 전환시를 1년으로 하며, 10년을 최대한도로 한다. 또한,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회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한다.

라.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1) 보험료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설정한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일시납보험료를 말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해당사항 없음

(3) 보험료 납입한도

해당사항 없음

7.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한다.

(가) 장기유지보너스 가산대상 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납 이상 또는 보험가입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계약

(나)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다)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 12 × 보험료 납입기간 × 장기유지보너스지급률

- 장기유지보너스지급률

가입금액 납입기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5년납	0.0%	0.0%	2.0%
7년납	2.5%	2.5%	3.0%
10년납	6.0%	6.3%	6.5%
12년납	6.0%	6.5%	6.8%
15년납	6.2%	6.5%	7.2%
20년납	6.5%	7.5%	8.0%

(2)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하는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6조(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항 제(2)호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3) 장기유지보너스 가산대상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또는 적립형 계약 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일부전환할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전환 이후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을 적용한다.
- (4) 장기유지보너스 가산대상 계약에 한하여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적립형 계약 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일부를 전환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전환 이후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한다.

나.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및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 해당사항 없음

8.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납입완료보너스 가산금액을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일에 추가 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한다.

(가)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일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나) 납입완료보너스 가산금액

5년납, 7년납 :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 $\times$ 1.5%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 $\times$ 3.0%

(다)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비갱신형 특약보험료로 한다. 단,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이후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비갱신형 특약보험료'는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에서 제외한다.

- (2)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하는 납입완료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6조(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항 제(2)호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3)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적립형 계약 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일부전환할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전환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비갱신형 특약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를 적용한다.
- (4)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적립형 계약 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일부를 전환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전환 이후 납입완료보너스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한다.

나.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및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 해당사항 없음

9.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당월분 포함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다만,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해당월 월계약해당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6조(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항 제(2)호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다. 특약보험료의 경우 ‘가’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배수와 동일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항에 따른 선납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는 경우 특약보험료는 각 특약의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로 할인하여 ‘가’항에 따른 선납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10.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에 연체된 기간 동안의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보장형 계약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12회 납입) 이내에 실효된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의 합계액 이상의 금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이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공제액 및 특약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 이상의 금액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12회 납입)이 지난 후에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공제액 및 특약보험료(특약부활(효력

회복)시) 이상의 금액

(2) 적립형 계약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다만,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의 합계액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한다.

(3) 스마트전환형 계약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단, 연금선지급기간 중 연체된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나.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12회 납입)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시 회사는 미공제된 월공제액을 공제한다.

다.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다.

라. 보장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기본보험금액은 해지 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2.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경우는 전환일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각각에 대하여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나. 1회당 인출가능금액

(1) 보장형 계약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50% 이하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 제외)의 50% 이하

(2)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

금 제외)의 50% 이하

(3)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해당사항 없음

- (4)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보장형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전환금액(전환이후 추가납입보험료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한다.

(1) 보장형 계약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2)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3)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해당사항 없음

라. ‘가’항 및 ‘나’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다’목 및 ‘거’목에서 정한 보험료적립금(단, 스마트전환형 계약 [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 및 적립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아래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 (1) 보장형 계약 납입기간 이내 : 해당사항 없음
- (2) 보장형 계약 납입기간 이후 : 1구좌당 200만원
- (3) 스마트전환형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
- (4)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5배
- (5)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해당사항없음

13.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계산에 관한 사항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을 각각 계산하여 적용한다.

- (1)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래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α + 운용자산이익률 × (1 - α)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시중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하며,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 (A1×β1 + A2×β2 + A3×β3 + A4×β4)

A1 : 국고채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4 :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주) 1. 국고채 수익률은 5년만기 국고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2. 회사채 수익률은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를 기준으로 한다.
 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통화안정증권(1년)을 기준으로 한다.
 4.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양도성예금증서(91일)을 기준으로 한다.

○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qua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end{aligned}$$

※ **a** :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잔의 평균)

b :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잔의 평균)

c :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잔의 평균)

d : 보험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나)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13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이익})}$$

○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13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다) 외부지표금리 가중치(a)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 a)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외부지표금리 가중치(a) = $\frac{A/B+C}{A+C}$

○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 = $1 - \frac{A/B+C}{A+C}$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하며,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가중치는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

(가) 보장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나) 적립형 계약 :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2%,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 (5)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신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4.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나.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될 수 있다.

15. 보장형 계약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나.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다. 회사는 보장형 계약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조정해지환급금」 + 가산적립금 + 추가적립금

• 조정해지환급금

= 보장형 계약 표준형의 예정기본해지환급금 × 50%

(2) 보험료 납입기간 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계약의 보험료적립금

라. 회사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에는 ‘다’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마. ‘다’항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후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의 기간을 말한다.

바.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한다.

사.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6.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본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나. 스마트전환형 계약

- 해당사항 없음

다. 적립형 계약

(1)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제17조(월공제액 및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항 제(1)호에 따라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을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초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라.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 해당사항 없음

17. 월공제액 및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월공제액[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료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 × 12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 × 12회 납입)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다)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 × 12회 납입) 이내에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나. 월대체보험료[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1) 적립형 계약

(가)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유지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나) 납입유지비용 및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한다.

(2) 스마트전환형 계약

(가)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후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월계

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하며,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의 경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다)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의하여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계약은 월대체보험료에서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를 제외하며, 연금선지급이 완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특약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를 다시 월대체보험료에 포함한다.

18.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 × 12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 × 12회 납입)이 지난 후

제17조(월공제액 및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나. 적립형 계약

제17조(월공제액 및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항 제(1)호에 따라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제17조(월공제액 및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항 제(2)호에 따라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라.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해당사항 없음

19.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한다.

나.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6조(보험료에 관한 사항) ‘다’항 제(1)호에서 정한 전환금액과 전환한 후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장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일부전환할 경우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일부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1) 보장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경우

-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신청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감액신청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신청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보장형계약의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일부전환시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text{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times \left(1 - \frac{\text{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text{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right)$$

- 스마트전환형계약의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일부전환시

일부전환 직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일부전환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text{일부전환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times \left(1 - \frac{\text{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text{일부전환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right)$$

(2) 「감액신청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또는 일부전환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3) 「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일부전환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4) 「감액신청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또는 일부전환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5) 「일부전환 직전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일부전환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라.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단, 특약보험료는 제외).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을 신청할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1)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적용하는 경우

-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감액시

감액신청이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감액신청직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text{감액신청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신청직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text{감액신청직전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

- (2) 「감액신청 직전 적립형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20.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금액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금의 10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사망보험금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최저사망보험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제18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한다.

-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액과 해지환급금 그리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적립형 계약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한다. 다만, 사망보험금이 제19조(『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항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다. 스마트전환형 계약

(1) 기본보험금액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금의 101%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사망보험금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부터 5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환일부터 5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5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5년 경과시 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 의 경과년수 다만, 전환일 이후 5년 경과시점 월계약해 당일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함

(3) 최저사망보험금

(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제18조(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한다.

(나)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버’목에서 정의한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한다.

(다) ‘(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전환일 이후 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하’목에서 정의한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예정적립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의 경우 제(1)호 및 제(3)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액과 해지환급금 그리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5)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의 경우 제(1)호 및 제(3)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기본보험금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1.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 (1)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계약
- (2)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연금전환되지 않은 계약
- (3)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다만,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이후 연금선지급이 완료되거나 제24조(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특칙에 관한 사항) ‘사’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계약은 적립형 계약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 (4)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 (5)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나. ‘가’항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다.

- (1) 전부전환의 경우 계약자는 전환신청시 약관에서 정한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을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한다.
- (2) 일부전환의 경우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로 한다.

다. 보장형 계약에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나’항 제(1)호에 따라 선택하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는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이어야 한다.

라. ‘가’항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시점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이하 ‘전환일’이라 한다).

마. ‘나’항 제(1)호에 따라 선택한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와 다를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바. ‘나’항 제(1)호에 따라 선택하는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일 경우 ‘나’항 제(1)호에서 정한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 ‘가’항에 따라 계약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아. 전환일 당시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 (1) 전부전환의 경우 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함)
- (2) 일부전환의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전환할 경우,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동 변경된다.

- 일부전환 직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begin{aligned} & \text{일부전환 직후의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 \text{일부전환 직전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text{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 \\ & \quad \text{가입금액} \end{aligned}$$

차.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은 전부 전환시 적립형 계약, 일부전환시 보장형 계약으로 한다.

카. 기타 적립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22.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부를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 (1)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계약
- (2)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연금전환되지 않은 계약
- (3)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다만,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이후 연금선지급이 완료되거나 제24조(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특칙에 관한 사항) '사'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계약은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 (4) 전환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 (5)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나. '가'항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으로 한다.

다. 보장형 계약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입자녀)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나'항

에 따라 선택하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는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이어야 한다.

- 라. ‘가’항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시점은 전환 신청일 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이하 ‘전환일’이라 한다).
- 마. ‘가’항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바. ‘나’항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선택한 경우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 사. ‘나’항에 따라 선택하는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일 경우 ‘나’항에서 정한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아.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은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한다.
- 자. 기타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23.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일부를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각각 1회에 한하여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 (1)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계약
- (2)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연금전환되지 않은 계약
- (3)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계약(다만, 연금선지급이 개시된 이후 연금선지급이 완료되거나 제24조(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특칙에 관한 사항) ‘사’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계약은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 (4)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 주계약에 한하며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시 설정한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일시납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 (5) 약관 제40조(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 제4항에서 정한 전환직후 ‘보장형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 나. ‘가’항에 따라 보장형 계약의 일부를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배우자) 및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으로 한다.
- 다. ‘가’항에 따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일부를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피보험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 피보험자의 자녀 중 1인으로 한다.
- 라. 보장형 계약에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나’항에 따라 선택하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가입자녀)는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가입자녀) 중 1인이어야 한다.
- 마. ‘가’항에 따라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시점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한다(이하 ‘전환일’이라 한다).
- 바. ‘가’항에 따라 계약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자는 제25조(기타사항) ‘자’항에 따라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하여야 한다.
- 사.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은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한다.
- 아.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이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날부터 약관 제40조(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 계약(보장형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약관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되어, 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취소를 선택한 경우
 - (2)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피보험자가 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 자. 기타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24.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관한 사항

이 특칙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을 선지급한다.

가. 이 특칙은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에 따라 운용한다.

나. 특칙의 보험기간, 연금선지급 개시나이, 연금선지급 기간

보험기간	연금선지급 개시나이	연금선지급기간
연금선지급 개시일부터 최종 연금선지급일까지	피보험자 나이 55~90세	2년 ~ 20년

다. 특칙의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조건

각 호의 계약에 대하여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를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보장형 계약

- (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계약
- (나) 보험계약일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다)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경우
- (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 (마) 연금전환특약에 의해 연금전환하지 않은 경우

(2) 스마트전환형 계약

- (가) 전환일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나)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경우
- (다) 연금전환특약에 의해 연금전환하지 않은 경우

라. 특칙의 보험료 납입기간

- 해당 없음

마. 특칙의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하지 않음

바. 특칙의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다만, 약관 별표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따른다).

사. 기타 특칙 운용에 관한 사항

(1) 연금선지급 대상금액 및 연금선지급기간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신청 시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연금선지급 대상금액 및 '나'항의 연금선지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2) 연금선지급 방법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선지급 대상금액을 연금선지급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연금선지급기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에서 감액하며,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선지급금액으로 하여 이 특칙의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지급한다.

※ 연금선지급 해당일 :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신청일' 및 연금선지급기간 이내의 매년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 신청일'과 동일한 월, 일(다만, 해당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3) 연금선지급 후의 처리

(가)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보장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해당일에 감액된다.

(나) 계약자는 연금선지급기간 중 언제든지 연금선지급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선지급을 종료한다. 또한, 계약자는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이후에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 연금선지급기간 중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지(월공제액 또는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어 해지되는 경우 포함)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약정한 연금선지급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금선지급은 종료된다. 다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연금선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해당 연금선지급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라) 스마트전환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금선지급 개시 이후에 해당 특약의 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는 월대체보험료에서 제외하고, 매월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월계약해당일에 해당 특약의 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연금선지급일까지 연금선지급이 완료되거나 (나)목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경우 해당 특약의 보험료(특약의 기타비용 제외)는 월대체보험료에 포함한다.

(마) 연금선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료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적립형 계약 전환, 스마트전환형 계약 전환, 연금전환 및 선지급서비스특약에 의한 사망보험금 선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연금선지급일까지 연금선지급이 완료되거나 (나)목에 따라 연금선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5. 기타사항

가. 보장형 계약의 1구좌의 구성

1구좌는 주계약 1억원으로 함.

나.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계약

- 보험계약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보장형 계약,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및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중 하나 또는 전부

(2)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피보험자

- 전환전 계약 피보험자

(3) 운용방법

(가) 회사는 연금전환전계약의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 포함 가능)을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한다.

(나)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연금액은 연금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연금개시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며, 연금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경우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전환 시 「보장형 계약 가입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단, 연금사망률의 가입나이는 보장형 계약 가입시점 나이, 연금지급개시나이는 전환시점의 나이로 한다)」이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장형 계약 가입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연금전환시점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 가입 당시 출생전인 경우 연금전환시점 피보험자의 보장형 계약 가입시점 나이는 0세로 한다.

(라)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으로 연금전환시 회사가 정한 계약인수지침 등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 할 수 있다.

다. 적립형 계약, 스마트전환형 계약 및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은 취급하지 않는다.

라.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적립형 계약 전환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계약의 고객안내사항

기본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안내한다.

(1)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더’목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의 개념 및 월대체보험료 공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은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

(2)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다는 사실

(3)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대체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4)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월대체보험료로 충

당 가능한 개월수

- (5) 제(4)호의 월대체보험료로 총당 가능한 개월수는 안내시점의 월대체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공시이율, 위험보험료, 부가특약의 보험료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바. 헬스케어 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1)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개인[신용]정보수집,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제공한다.
- (2)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다.
- (3)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사.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 또는 스마트전환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시 회사는 전환신청서상 보험계약자의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험안내자료 등의 필수 기재사항 및 청약서의 고객확인사항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 등이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청약서에는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시 다음의 ①호 및 ②호에 대한 회사의 설명 및 안내 여부를 계약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운용한다.

- ①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방법
- ②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 및 동보험의 계약 무효(또는 계약 취소 선택)사유

자.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의 최대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단, 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 전환시점의 피보험자 연령이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을 최대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차.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카.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안내(스마트치매전환형 계약으로 전환 시에 한함)

- (1)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이 불가능

하거나, 계약자가 미지정을 요청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3) '(2)'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 수령을 생략할 수 있다.
- (4) 회사는 전환시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치매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미지정 사유 구분, 모집인 확인, 전산적 재확인, 사후 관리 등 적절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별첨 제1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안내사항”

※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납입보험료 비교[대표계약 기준]

(단위 : 원)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1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기간중 50%)	표준형

■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대표계약 기준]

(단위 : 만원)

경과 기간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1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해지환급금 보증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기간중 50%)		표준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및 납입완료보너스를 포함한 예시이며, 상기 환급률은 기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중도해지시 아래의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조정해지환급금」 + 가산적립금 + 추가적립금

• 조정해지환급금 =

보장형계약 표준형의
예정기본해지환급금 $\times$ 50%

(2) 보험료 납입기간 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계약의 보험료적립금

■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모집자 확인]

담당 모집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모집자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모집자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_____ (인/서명) / 친권자_____ (인/서명)

※ 상기 안내사항은 견본양식으로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업방법서 별지2]

1. 보험종목의 명칭

구 분	보험종목의 명칭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기간중 50%) (이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이라 한다)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1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
표준형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1 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해지환급금 미보증)

※ 단, ‘표준형’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함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 종신

나. 보험료 납입기간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다. 가입나이

(1) 가입최저나이 : 만 15세

(2) 가입최고나이 : 성별, 납입기간별로 아래와 같음

구분		최 고가 입 나이
남 자	5년납	71세
	7년납	70세
	10년납	67세
	12년납	66세
	15년납	64세
	20년납	61세
여 자	5년납	76세
	7년납	74세
	10년납	72세
	12년납	71세
	15년납	69세
	20년납	66세

라.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조건부인수를 위한 부가특약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표준하체인수특약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하지 않음

6.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기본보험료 총액(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배로 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다음에 정한 한도로 한다.

-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100% $\times$ 보험료 납입완료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후 경과년수는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한다. 또한,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한다.

7.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한다.

- (1) 장기유지보너스 가산대상 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납 이상 또는 보험가입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계약

- (2)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 (3)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

주계약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보험료 납입기간 $\times$ 장기유지보너스지급률

- 장기유지보너스지급률

가입금액 납입기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5년납	0.0%	0.0%	2.0%
7년납	2.5%	2.5%	3.0%
10년납	6.0%	6.3%	6.5%
12년납	6.0%	6.5%	6.8%
15년납	6.2%	6.5%	7.2%
20년납	6.5%	7.5%	8.0%

- 나.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하는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6조(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항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다. 장기유지보너스 가산대상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이후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을 적용한다.
- 라. 장기유지보너스 가산대상 계약에 한하여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이후 보험가입금액 및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한다.

8.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납입완료보너스 가산금액을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한다.

(1) 납입완료보너스 가산일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한다.

(2) 납입완료보너스 가산금액

5년납, 7년납 :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 × 1.5%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 × 3.0%

(3)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 :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비갱신형 특약보험료로 한다. 단, ‘납입이 면제된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 이후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비갱신형 특약보험료’는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에서 제외한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 가산하는 납입완료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6조(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항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다.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이후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비갱신형 특약보험료를 기준으로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를 적용한다.
- 라.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보험금과 함께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감액 이후 납입완료보너스 대상보험료에 해당하는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을 지급한다.

9.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가. 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당월분 포함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나. ‘가’항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부터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다만,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해당월 월계약해당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선납보험료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6조(보험료에 관한 사항) ‘나’항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다. 특약보험료의 경우 ‘가’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배수와 동일한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항에 따른 선납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는 경우 특약보험료는 각 특약의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로 할인하여 ‘가’항에 따른 선납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10.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다음의 금액에 연체된 기간 동안의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12회 납입) 이내에 실효된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와 특약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

- 의 합계액 이상의 금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이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공제액 및 특약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 이상의 금액
-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12회 납입)이 지난 후에 실효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공제액 및 특약보험료(특약부활(효력회복)시) 이상의 금액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12회 납입)이 지난 후 부활(효력회복)시 회사는 미공제된 월공제액을 공제한다.

다. 부활(효력회복)시 기본보험금액은 해지 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1.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2.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부터 경과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한다.

나. 1회당 인출가능금액

- (1)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 제외)의 50% 이하
- (2)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라. ‘가’항 및 ‘나’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이 1구좌당 2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

13.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계산에 관한 사항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1)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 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아래 산출방식과 같이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장래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한다.

◎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α + 운용자산이익률 × (1 - α)

-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시중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하며,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 (A1×β1 + A2×β2 + A3×β3 + A4×β4)

A1 : 국고채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4 :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주) 1. 국고채 수익률은 5년만기 국고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2. 회사채 수익률은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AA-)를 기준으로 한다.
3.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은 통화안정증권(1년)을 기준으로 한다.
4.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은 양도성예금증서(91일)을 기준으로 한다.

-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qua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end{aligned}$$

※ **a** :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잔의 평균)

b :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잔의 평균)

c :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잔의 평균)

d : 보험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 (나)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운용자산수익률’ 및 ‘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다만,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13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이익})}$$

○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13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 - \text{직전12개월간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 (다) 외부지표금리 가중치(a)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 a)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 외부지표금리 가중치(a) = $\frac{A/B+C}{A+C}$

○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 = $1 - \frac{A/B+C}{A+C}$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하며,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가중치는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동종 계정에 있는 동종상품[제(1)호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 이상으로 적용한다.
- (3)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 (4)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한다.

- (5)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신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른다.

14.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한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15.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나.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다.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조정해지환급금」 + 가산적립금 + 추가적립금

• 조정해지환급금 =

$$\frac{\text{표준형의}}{\text{예정기본해지환급금}} \times 50\% \times \text{MIN} \left[\frac{\text{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text{기본보험료에 의한 예정적립금}}, 1 \right]$$

(2) 보험료 납입기간 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라. 회사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마. ‘다’항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후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서의 기간을 말한다.

바.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과 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한다.

사.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6.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본보험료와 부가된 특약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또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17.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 $\times$ 12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 $\times$ 12회 납입)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 특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한다.

(3)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 $\times$ 12회 납입) 이내에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한다.

18.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 $\times$ 12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납입기간 × 12회 납입)이 지난 후

제17조(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가’항 제(2)호에 따라 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한다.

19.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1) 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감액시

감액신청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frac{\text{감액신청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text{감액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 \times \frac{\text{감액신청 직후 보험가입금액}}{\text{감액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

(2) 「감액신청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20.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금액

기준사망보험금과 계약자적립금의 10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나. 기준사망보험금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인한 기준사망보험금의 감소는 계약자적립금의 인

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최저사망보험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 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한다.

라. ‘다’항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이 지난 후,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나’항 제(2)호에서 정의한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마. ‘가’항 및 ‘다’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1. 기타사항

가. 1구좌의 구성

1구좌는 주계약 1억원으로 함.

나.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계약

- 보험계약일 이후 10년이 경과한 계약

(2)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피보험자

전환전 계약 피보험자

(3) 운용방법

(가) 회사는 연금전환전계약의 해지환급금(특약의 해지환급금 포함 가능)을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한다.

(나)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연금액은 연금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연금개시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며, 연금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및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의 경우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전환 시 「전환전 계약 가입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단, 연금사망률의 가

입나이는 전환전 계약 가입시점 나이, 연금지급개시나이는 전환시점의 나이로 한다)」이 「스마트연금전환특약 무배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 가입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라) CI연금전환특약 무배당 및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으로 연금전환시 회사가 정한 계약인수지침 등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전환 할 수 있다.

다.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라. 헬스케어 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1)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개인[신용]정보수집,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제공한다.

(2)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다.

(3) 헬스케어 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마.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바.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공시이율 수준의 하락에 따라 이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다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증한다는 내용 포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별첨 제1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안내사항”

※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납입보험료 비교[대표계약 기준]

(단위 : 원)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1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기간중 50%)	표준형

■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대표계약 기준]

(단위 : 만원)

경과 기간	한화생명 평생동행 종신보험2201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기간중 50%)		표준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 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및 납입완료보너스를 포함한 예시이며, 상기 환급률은 기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중도해지시 아래의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조정해지환급금」 + 가산적립금 + 추가적립금

• 조정해지환급금 =

표준형의
예정기본해지환급금 $\times$ 50% $\times$ 해지환급금 조정계수

※ 해지환급금 조정계수

‘기본보험료에 의한 예정적립금’에 대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의 비율을 말하며, ‘기본보험료에 의한 예정적립금’보다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클 경우 해지환급금 조정계수는
100%로 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표준형 상품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 등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모집자 확인]

담당 모집자 ○○○은(는) 위 내용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모집자_____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모집자 ○○○(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_____ (인/서명) / 친권자_____ (인/서명)

※ 상기 안내사항은 견본양식으로 실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